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24호]

# 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

『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7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**<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>**

**<사업 일정>**

| 신청 · 접수기간 | 선정평가 | 협약 |
|---|---|---|
| '24년 10월 7일 ~ '25년 1월 6일 | '25년 1~3월 | '25년 4~5월 |

**<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> (┆┆는 생략 가능)**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사업공고 주요변경 사항</th></tr>
<tr><th>2024년도</th><th>2025년도</th></tr>
<tr><td>접수시기</td><td>• '24년 2~3월(1개월 내외)</td><td>• '24년 9월~ '25년 1월(약 3개월)</td></tr>
<tr><td>사업비구성</td><td>• 사업비 편성시 현금만 가능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정부 지원금</th><th colspan="2">민간부담금</th><th rowspan="2">합계</th></tr>
<tr><th>현금</th><th>현물</th></tr>
<tr><td>200<br>(50%)</td><td>200<br>(50%)</td><td>-<br>(-)</td><td>400<br>(100%)</td></tr>
</table></td><td>• 사업비 편성시 현물도 가능<br>(민간부담금 중 20%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정부 지원금</th><th colspan="2">민간부담금</th><th rowspan="2">합계</th></tr>
<tr><th>현금</th><th>현물</th></tr>
<tr><td>200<br>(50%)</td><td>160<br>(40%)</td><td>40<br>(10%)</td><td>400<br>(100%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사업관리<br>변경사항</td><td>중간점검 ▸ 구축진행 ▸ 최종감리 ▸ 완료점검 ▸ 집중A/S ▸ 최종평가</td><td>중간점검 ▸ 구축진행 ▸ 최종감리 ▸ 완료점검 ▸ 집중A/S ▸ 최종평가</td></tr>
<tr><td>중간점검</td><td>•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</td><td>•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(협약후 3개월 내)</td></tr>
<tr><td>최종점검</td><td>•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</td><td>• 최종점검으로 통합</td></tr>
<tr><td>집중A/S</td><td>• 집중 A/S기간 6개월 필수 수행</td><td>• 최종평가결과 "보완" 시 집중A/S 수행 및 최종재평가 진행</td></tr>
</table>

**<사업계획서 "2.6 표준 연계" 필수 작성>**

· 스마트 제조 표준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연계 구성도,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

※ ('24년) 스마트공장 표준적용 시 가점 부여 → ('25년) 스마트공장 표준 적용 필수

○ **(IEC 62541)** OPC 통합 아키텍처

○ **(IEC 63278)**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

## 1. 사업 개요

### □ 사업 개요

○ (사업 목적)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

○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*(5개 이상), 공급기업,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○ (지원 내용) 협업체 중심의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

- (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·생산, 유통·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

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지원

### □ 지원 과제 및 조건

○ (지원 과제) 6개 컨소시엄 내외

○ (지원 조건) 컨소시엄당 최대 10억(총 사업비 50% 이내)

| 구 분 | | 지원 한도 | 지원 기간 | 지원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개별 스마트공장 +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| 고도화(동일수준) | 0.5억 원 | 최대 12개월 | 50% 이내 |
| | 고도화 | 2억 원 | | |

* 개별 스마트공장의 지원 조건은 정부일반형과 동일

## 2. 신청기간 · 방법 및 자격 등

### □ 신청 기간·방법

○ (신청 기간) ’24. 10. 7.(월) ~ ’25. 1. 6.(월) 17시까지

>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> (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)
>
> 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, 접수 불가

○ (신청 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
> ☞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“디지털협업공장” → 과제 신청(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*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필수

○ (제출 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| 구 분 | 제출서류 목록 |
|---|---|
| 제출 서류 | - 사업계획서(공동, 개별, 기획기관)<br>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br>-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br>*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제출<br>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<br>- (참여기업)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<br>- (참여기업) 참여인력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<br>- 대표기업이 가점 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<br>(해당시,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<br>-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(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) |

*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‘알림/참여마당-자료실’ 참고



### □ 신청 자격

○ (공통 사항) 컨소시엄 내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, 분쟁·갈등 방지,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

* 공증 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하며,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

○ (도입기업 컨소시엄)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·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(최소 5개)

**※ 최종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(5개 이상) 유지 필수**

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○ (공급기업 컨소시엄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, 사업관리시스템의 ‘공급기업 Pool’에 등록된 기업으로 구성

※ ‘사업관리시스템 – 알림/참여마당 - 공지사항’에서 “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” 참고

○ (기획기관)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, 개별기업(대표 및 참여)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·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*

*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, 연구기관, 지역특화·혁신센터, 지자체 연구소, 협·단체, 지역TP, 공공기관 등

○ (지원 제외 대상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‘신청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-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(붙임2 참조)

**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·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**

## 3. 지원 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 절차 (붙임1 참고)

○ (서면 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협업공장 연결효과, 구축의 필요성, 지원의 적정성,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

※ 서면평가 접수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

○ (기술성 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협업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컨소시엄의 역량 등을 대면(발표)으로 평가

○ (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가점 등 확인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

○ (최종 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

### □ 추진 절차

* ⑩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집중A/S' 및 '⑫재평가' 진행



## 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### □ 신청·접수 관련

○ (사업계획작성) 도입·공급기업, 기획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
- (기획기관 운영계획) 기관의 운영역량 및 컨소시엄의 관리·역량 강화 방안,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의 확산 전략 등을 작성
- (공동·활용 구축 계획)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범위(목표) 및 활성화 계획, 제조데이터 공유·활용에 대한 계획 등 작성
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) 참여기업의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계획·목표 등 작성

< 디지털협업공장 예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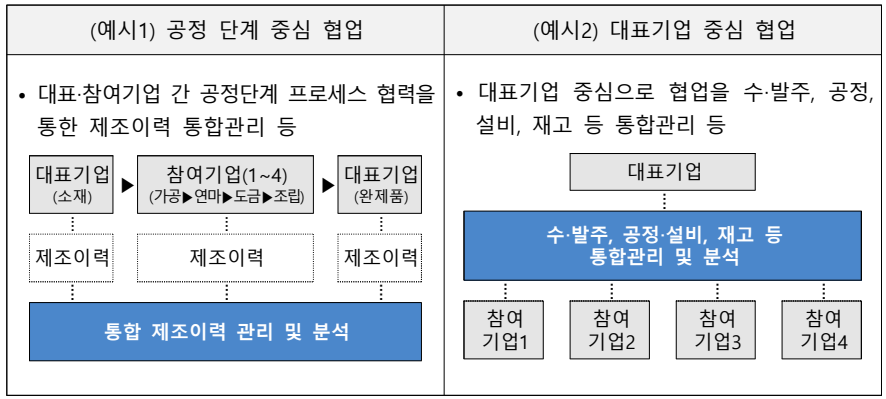


○ (구축 목표 설정)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,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'동일 수준' 유형으로 신청

※ (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)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' 에서 조회 ('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)

※ '동일수준' 예외 사항

○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**초과 달성**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 가능

* (예시, 초과달성) ①'기초'목표로 수행후 '중간1' 달성, ②'중간1'목표로 수행 후 '중간2' 달성

○ **자체적으로**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**'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'**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이 가능

○ (보안대책 수립)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

## □ 제조 데이터 표준 적용

○ (양식) 사업계획서의 **"2.6. 표준 연계"** 필수 작성

- 구성도, IEC 62541(OPC 통합아키텍처) 및 IEC 63278(AAS,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)의 표준 적용 범위 등 작성

< 제조데이터 대상 표준 >

❶ **(IEC 62541)** OPC 통합 아키텍처

- 설비(하드웨어)-플랫폼-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*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

* 인터페이스(하드웨어-소프트웨어 통신, 플랫폼-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)

❸ **(IEC 63278)**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

-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*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

*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

- 필요시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적용과 관련한 통신장비(DAQ 등) 및 센서 추가 등 구축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 가능



## □ 사업비 편성 관련

○ (사업비 구성)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시 "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", "개별 스마트공장 구축"으로 세부내역을 구별하여 사업비 구성

※ (예시) 사업비 구성 : (공동·협업) 6억원(1.2억원x5개) + (개별 구축) 14억원(2.8억원x5개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| 총사업비 | | | 사업비 구성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직접사업비 (50%) | 민간부담금 (50%) | 합계 (100%) | 공동·협업 (30%) | 개별구축 (70%) | 합계 |
| A 컨소시엄 | 합계 | 1,000 | 1,000 | 2,000 | 600 | 1,400 | 2,000 |
| | 대표기업 | 200 | 200 | 400 | 120 | 280 | 400 |
| | 참여기업1 | 200 | 200 | 400 | 120 | 280 | 400 |
| | 참여기업2 | 200 | 200 | 400 | 120 | 280 | 400 |
| | 참여기업3 | 200 | 200 | 400 | 120 | 280 | 400 |
| | 참여기업4 | 200 | 200 | 400 | 120 | 280 | 400 |

○ (기획기관 운영비)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로 위탁운영비 별도 편성

* 향후 최종선정 및 원가계산이 완료된 컨소시엄의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조정

○ (필수 비용) ①회계 정산 수수료,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각 참여기업 "개별 스마트공장 구축" 사업비의 기타비용에 필수 포함

① 회계 정산 수수료 :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

<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>

| 총사업비 규모 | 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, 천원) | 비고 |
|---|---|---|
| 50백만원 이하 | 455 | 부가세 제외 |
| 200백만원 이하 | 637 | |
| 400백만원 이하 | 910 | |
| 400백만원 초과 | 1,182 | |

* 정산대상 사업비(총사업비) :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

② 교육비 : 스마트공장 기술교육(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) 수강 비용(1백만원) 필수 편성

③ 기술임치비 :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(45만원) 필수 편성

< 기술임치제도 >

- ○ **(임치제도)**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,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○ **(임치효과)**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○ **(의무사항)**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**2년 이상 기술임치**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
※ (임치기관)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escrow@win-win.or.kr)

○ (현물편성)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(현금·현물 모두가능)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%*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

*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,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

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**최대 3년의 비용***을 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
*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, 소기업 규모 기준은 [참고] 확인

-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해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
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

## □ 교육 이수

○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아래의 ① 사업관리교육 및 ②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점검 시 수료증 필수 제출

- (교육기관) 별도 안내

| 구 분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①사업관리교육<br>(온라인) | - 대상 : 도입기업, 기획기관, 공급기업(총괄책임자 및 실무자)<br>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<br>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,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|
| ②스마트공장<br>관련 교육 | - 대상 : 도입기업<br>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|
| ③제조데이터<br>표준모델<br>관련 교육 | - 대상 : 도입기업, 기획기관, 공급기업(총괄책임자 및 실무자)<br>- 내용 :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던스 활용, AAS 기반 제조데이터 수집·저장체계 등 |

*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·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

## □ 기타 사항

○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

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
○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

○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

# 5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○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○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
○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## □ 사업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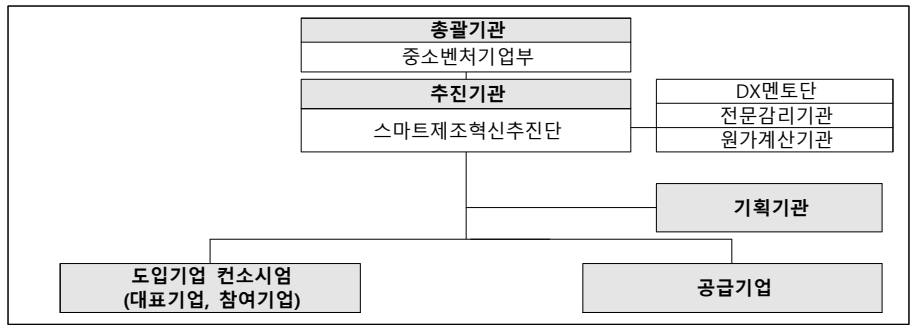

## □ 담당 기관

| 구분 | 주체 | 역할 |
|---|---|---|
| 총괄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 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|
| 추진기관 |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| - 사업 추진계획 수립, 세부관리기준 제개정<br>- 기획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|
| 기획기관 | 지역TP 및 공공기관, 협·단체 등 | - 디지털협업공장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<br>- 구축현황 점검(중간, 완료점검 등)<br>- 사후관리, 사업비 집행, 협약변경 등<br>- 문제과제 특별점검 등 |
| 도입기업 | 대표기업 | - 공동협업 플랫폼 구축 및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총괄관리 등 |
| | 참여기업 | - 개별 스마트공장 추진 및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협력 등 |
| 공급기업 | 공급기업 컨소시엄 | - 공동협업 플랫폼 구축 및 개별 도입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총괄 진행, 참여 공급기업 관리 등 |

## 6. 문의기관

## □ 담당기관 연락처

| 담당 기관 | | 문의 사항 | 전화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과) |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| 044-204-7253, 7262 |
| 추진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 | | 044-300-0951~3, 0957 |

※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'사업관리시스템 – 전체메뉴(우상단) - 마이페이지 – 고객센터 – SR요청' 으로 문의

☞ 관련 웹사이트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ss.go.kr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http://smart-factory.kr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http://pf.kakao.com/_IIfqd



# 붙임 1 평가 지표

## □ 서면 평가지표

| 평 가 항 목 | | 배점 |
|---|---|---|
| 공급망 연결효과 (30점) | • 디지털협업공장 도입 배경 및 필요성 | 15 |
| | • 대표·참여기업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| 15 |
|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(20점) | •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? | 10 |
| | •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? | 10 |
| 지원 적정성 (30점) | •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? | 10 |
| | •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| 10 |
| | •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'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? | 10 |
| 도입기업 역량 (20점) | • 사업목표의 적절성 | 5 |
| | •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| 5 |
| | • 핵심지표(KPI)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·정량적 기대효과 | 5 |
| | • 고용창출,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 | 5 |
| **총 점** | | 100 |

## □ 기술성 평가지표

○ 기획기관 역량평가

| 평가항목 | | 배점 |
|---|---|---|
| 보유역량 (50점) | • 신청기관의 보유한 전문성 | 10 |
| | • 추진실적 및 디지털협업공장과의 연계성 | 10 |
| | • 기관 조직의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| 10 |
| | • 컨소시엄 연계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보유 여부 | 10 |
| | • 디지털협업공장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외 추가 활용기업 Pool 보유 여부 | 10 |
| 사업수행 내용 (50점) | • 디지털협업공장 및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이해도 | 10 |
| | • 디지털협업공장 지원체계의 적정성 | 10 |
| | • 디지털협업공장 지원 방안 및 과정의 구체성 | 10 |
| | • 전략수립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 및 일정의 적절성 | 10 |
| | • 전담 PM 등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·배분의 적절성 | 10 |
| **합계** | | **100** |

○ 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

| 평가 항목 | | 배점 |
|---|---|---|
| 도입기업 역량 (30점) | • 디지털협업을 추진하는 목표가 명확하고,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현황이 양호하여 지속 가능한가? | 5 |
| | • 컨소시엄 참여기업 외 추가 활용기업이 확보되어 있는가? | 5 |
| | •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| 10 |
| | •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 | 10 |
|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(30점) | •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 | 10 |
| | •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 | 10 |
| | •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–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 | 10 |
|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(40점) | •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 | 10 |
| | •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 | 10 |
| | •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 | 10 |
| | •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| 5 |
| | •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 | 5 |
| 가점(5점) | - | (5) |
| 합 계 | | 100 |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①가점제외한 도입기업 컨소시엄 점수가 높은 기업, ②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


※ (참고) 가점 항목(2개)

| 구분 | 항목 | 세부내용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1 | 수준확인 | ·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'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| 수준 확인서 (발급일로부터 3년내) |
| 2 |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| · 사업공고일 이전 **연속 6개월**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%인 기업 ('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) |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|

※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,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

## □ 현장확인 항목

| 확인 항목 | | 확인여부 |
|---|---|---|
|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| ◦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 | 적/부 |
| | ◦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 | 적/부 |
| | ◦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 | 적/부 |
| 가점 여부 | ◦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| - |

## 붙임 2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

□ **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**(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)

| 사업명(지원유형)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---|---|---|---|---|
| -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(기초, 고도화1, 고도화2) | | | | |
| -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디지털 클러스터(선도형, 일반형) | | | | |
| -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디지털협업공장 | | | | |
| -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| | | | |
| - 자율형공장 | | | | |
| - 제조혁신 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 | | | | |

※ 단, 집중A/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

□ **동시 선정·신청 제한사업 목록**('25년 신규 신청인 경우)

| 사업명 | 내용 |
|---|---|
|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(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) | ①~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|
| ② 자율형공장 | |
|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| |
|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| |
| ⑤ 디지털 협업공장 | |
|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 |
| ⑦ 스마트공장 AS지원 |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(단, 유·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) |
|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| ①~⑤ 사업 중 하나와 ⑧,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※ ①~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⑧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|
| ⑨ 제조혁신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 | |



##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|---|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
| 17. 수도업 | E36 |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
| 19. 광업 | B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9. 건설업 | F |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